안전성 평가

2018. 03. 00

CONTENTS

- I 안전과 생산
- Ⅲ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 Ⅲ 원소 분석과 화합물의 조성
- IV 예상 문제

예비위험분석(PHA)의 4가지 범주

• 위험의 정도를 분류하는 4가지 범주에는 파국(Catastrophic), 중대(Critical), 한계(Marginal), 무시가능(Negligible)으로 구분 된다.

파국	작업자의 부상 및 서브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시스템 성능이
(Catastrophic)	저하되어 시스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상태
중대 (Critical)	작업자의 부상 및 시스템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작업 자의 생존 및 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즉시 수정 조치를 필 요로 하는 상태
한계	작업자의 부상 및 시스템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 대
(Marginal)	처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상태
무시가능 (Negligible)	시스템의 성능이나 기능, 인원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

안전성 평가 6단계

1단계	관계 자료의 작성 준비	
2단계	· 정성적 평가 · 설계(공장의 입지조건, 공장 내 배치)와 운전관계에 대한 평가	
3단계	· 정량적 평가 · 취급물질, 용량, 온도, 압력 및 조작을 통한 위험도 평가	
4단계	· 안전대책수립 · 보전, 설비대책과 관리적 대책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SSPP)

- 시스템 안전 필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정된 안전업무를 설명해 놓은 공식적인 기록을 말한다.
- 계획의 개요, 안전조직, 계약조건, 시스템안전기준 및 해석, 안전성 평가, 안전자료의 수집과 갱신, 경과와 결과의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설비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 외관의 안전화: 기계 설계 시 위험부분을 내장시키거나 덮개 등으로 씌우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
- 기능의 안전화: 기계 기구 사용 시 기능의 저하 없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
- 구조의 안전화: 급정지 장치 등의 방호장치나 오동작 방지 등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계 설계 시 적절한 재료, 충분한 강도로 신뢰성 있게 제작하는 것
- 보전작업의 안전화: 각종 기계 장치를 안전하게 배치하는 것
- 그 외에 작업점의 안전화와 작업의 안전화 등이 있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목적

- 기기 및 설비의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기기 및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재해 방지를 위하여 그 재해 요인의 대책과 실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 인적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합리적인 생산관리를 위함이다.

• 종류

정기점검	1개월 또는 1년 등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안 전점검
수시(일상)점검	작업장에서 매일 작업자가 작업 전, 중, 후에 시설과 작업 동작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임시(특별)점검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 부 정기적인 점검으로 기술적 책임자가 시행하는 점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개요
 - 안전점검표는 가능한 한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 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안전성적이 동종의 업종보다 불량할 때 주로 실 시한다.
 - 안전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 받은 경우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용어

위험성평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 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유해 · 위험요인	유해 ·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 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추정	유해 · 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결정	유해 ·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 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 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 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 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 순서

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단계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단계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단계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 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 ·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 적설 · 풍 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 을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비파괴검사

- 개요
 - 제품 내부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 파괴 없이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종류에는 누수시험, 누설시험, 음향탐상,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와류 탐상, 침투탐상, 방사선투과시험 등이 있다.
- 대표적인 비파괴검사

음향탐상검사	손 또는 망치로 타격 진동시켜 발생하는 낮은 응력파를 검사
방사선투과시험	X선의 강도나 노출시간을 조절하여 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의 반사(타진)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
자분탐상시험	결함부위의 자극에 자분이 부착되는 것을 이용
와류탐상시험	결함부위 전류흐름의 난조를 이용하여 검사
침투탐상시험	비자성 금속재료의 표면균열 검사에 이용

• 특징

- 생산제품에 손상이 없이 직접 시험이 가능하다.
- 현장시험이 가능하다.
- 시험방법에 따라 설비비가 많이 든다.

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화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심사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법령에 정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60일)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다른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 서 인증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 · 기구 상호인 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보호구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제품의 표시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인증 번호

1. 미국방성 위험성평가 중 위험도(MIL-STD-882B) 4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을 채우시오.

(1)	시스템의 성능이나 기능, 인원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
(2)	작업자의 부상 및 시스템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 대 처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상태
(3)	작업자의 부상 및 시스템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작업 자의 생존 및 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즉시 수정 조치를 필 요로 하는 상태
(4)	작업자의 부상 및 서브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상태

2. 안전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 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 평가

3.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SSPP)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 안을 채우시오.

```
      · ( ① )의 개요

      · 안전( ② )

      · 계약조건

      · 시스템 ( ③ )기준 및 해석

      · ( ④ ) 평가

      · ( ⑤ )의 수집과 갱신

      · 경과와 결과의 보고
```

4.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을 채우시오.

(1)의 안전화	기계 설비 시 위험부분을 내장시키거나 덮개 등으로 씌우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
(2)의 안전화	기계 기구 사용 시 기능의 저하 없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
(3)의 안전화	급정지 장치 등의 방호장치나 오동작 방지 등 소극적 인 대책이 아니라 기계 설계 시 적절한 재료, 충분한 강도로 신뢰성있게 제작하는 것
(4)의 안전화	각종 기계 장치를 안전하게 배치하는 것

5.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 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을 채우시오.

```
· ( ① )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 ② )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 ③ )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
우
· ( ④ )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실시 순서를 쓰시오.
 - ①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 ③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④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⑥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7. 사업주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고속회전체에 대한 설명의 ()안에 적당한 값을 적으시오.

비파괴검사를 하는 고속회전체는 회전축의 중량이 (①))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②)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 하는 심사의 종류이다. () 안을 채우시오.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는 (①)심사, (②)심사, (③) 능력 및 (④)심사, (⑤)심사로 구분된다.

- 9.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안을 채우시오.
 - ·(①)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②)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③)에 의해 검사 및 인증을 받은 경우
 - ·(④)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⑤)의 국제 방폭 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을 채우시오.

- ·(①) 또는 모델명
- · 규격 또는 등급 등
- · 제조자명
- ·(②) 및 제조연월
- ·(③) 번호

Thank you